

## 유럽연합의 저작권 개정 동향

### I. 서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오래 전부터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규정(Regulation)이나 지침(Directive)들(이하 규정)을 만들어 왔다. 특히, 2001년에 EU는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특정 관점에서의 조화를 위한 EU 저작권 지침’<sup>1)</sup>을 제정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저작권 관련 규정들의 개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유럽의회(EU Parliament)의 의원으로 당선된 Julia Reda(이하 Reda 의원)는 ‘2001년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을 유럽의회 법사위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정보사회 지침은 디지털 시대의 국경 간 문화적

교류에 적합하지 않아 유럽 저작권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Reda 의원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러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80개의 문항을 제시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한 참가율이 매우 높았으며, 각계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Reda 의원이 보고서 초안을 만들기 위해 행했던 의견 수렴의 절차와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II. 유럽연합 저작권 개정의 개요

#### 1. 2001년 저작권 지침의 개요

정보화 사회 저작권 지침은 본래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한 법이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WIPO 저작권 협정에서 발생하는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22.6.2001, L 167/10.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럽의 저작권법들에 대한 여러 면들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sup>2)</sup> 사실, 이러한 지침은 정보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회, 유럽연합이사회(EU Council)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모두 영향을 미쳤다.

본 지침은 4개의 장과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지침의 목적과 범위, 제2장은 권리와 예외, 제3장은 기술적 조치와 권리 관리 정보의 보호, 그리고 제4장은 일반적 규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해 부여되는 배타적인 권리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지침은 제2조에서의 복제권(reproduction right)을 공중에 대한 전달(communication)의 권리 또는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의 권리와 구별하였고, 뒤의 두 권리들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publication)와 전송(transmission)을 포함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 판매나 다른 방법에 의한 공개에 의해 배포된 형태를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작가들의 관련 권리는 제4조의 배포권에서 규정되어 있다.

제5조는 회원국들이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예외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네트워크 전송의 부분으로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복제 그리고 합법적 사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2항은 회원국들에게 제2조에서의 복제권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며, 구체적으로 (a) 사진 복제, (b) 사적 복제, (c) 도서관, 교육 목적, 박물관 등에서의 복제, (d) 방송의 기록 복제, (e) 비영리 목적의 사회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의 복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5조 제3항은 회원국들에게 제2조에서의 복제권과 제3조에서의 공중에 대한 전달의 권리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며, (a) 교육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한 도해, (b) 장애인을 위한 사용, (c) 사실에 대한 신문기사의 복제, (d) 비판이나 검토를 위한 인용, (e) 공공의 보안을 위한 사용, (f) 정치적 연설, 공개적 강연, (g) 종교적이거나 공식적인 행사 동안의 사용, (h) 공개적 장소에 있는 건축이나 조각의 사용, (i) 작품의 부수적 포함, (j) 공개적 전시나 예술품의 판매에 대한 광고, (k)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셰, (l) 기계의 설명이나 수리, (m) 재건축을 위한 도면의 사용, (n) 비상업적 연구나 개인적 연구인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제5조 제5항은 저작권 예외 규정이 해당 작품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2) Council Decision of 16 March 2000 on the approval,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2000/278/EC), OJ no. L089 of 2000-04-11, pp. 6-7.

제6조는 회원국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복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적 조치들을 고의적으로 우회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제7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저작권 지침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들에 의해, 유럽연합의

의원인 Julia Reda는 유럽연합 저작권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저작권 지침의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이용자,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 서비스 제공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절차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예정된 수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1〉 의견 수렴을 위한 80문항<sup>3)</sup>

문항	질의
1	(사용자나 소비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EU 회원국에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려 할 때, 당신은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2	(서비스 제공자) EU에서 경계를 넘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당신은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3	(권리자나 집합적 관리 조직) 얼마나 자주 당신은 다수 지역(multi-territorial)의 라이선스를 부여받도록 요청받는가?
4	만일 당신이 위에서의 질문에 대한 문제들을 표현하였다면,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5	(권리자나 집합적 관리 조직) 당신이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6	(방송사업자나 서비스제공자) 당신이 여전히 서비스 수신자에 대한 지역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7	단일 시장에서 콘텐츠 서비스의 국경을 넘은 이용가능성을 EU의 수준에서 향상시키는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8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배포될 때, 가능하게 하는 권리의 범위는 충분히 명확한가?

3)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the EU copyright rules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sultations/2013/copyright-rules/docs/consultation-document\\_en.pdf](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nsultations/2013/copyright-rules/docs/consultation-document_en.pdf) 2015. 5. 13 최종 방문).

문항	질 의
9	(권리자) 가능하게 하는 권리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설명은 당신의 권리들에 대한 인식, 당신의 보수 또는 권리의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10	(서비스제공자나 권리자) 온라인 환경에서 경제적 실행의 단일 행위에 대한 두 권리들의 적용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11	다른 저작물로 이끄는 하이퍼링크의 제공이 권리자의 허가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12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의 현시가 권리자의 허가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13	(사용자나 소비자) 당신이 구입했던 디지털 파일들을 재판매하려할 때, 당신은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14	(권리자나 서비스제공자) 전에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15	EU 차원에서 등록 시스템의 개설이 인지와 저작물의 라이선싱을 도울 것인가?
16	그러한 시스템의 가능한 이점은 무엇인가?
17	그러한 시스템의 가능한 불이익은 무엇인가?
18	권리자들에 의한 등록의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예상되는가?
19	식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 데이터베이스 소유와 허락에 대한 권리의 발전 및 상호운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EU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20	디지털 환경에서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여전히 적정한가?
21	EU 저작권 지침에서 제공되는 제한과 예외가 회원국들에게 선택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가?
22	예외들은 강제적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예외의 조화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한가?
23	새로운 제한이나 예외가 추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 유형으로부터 제거되어야만 하는가?
24	위의 문제와 별개로, 제한과 예외에 대한 EU의 규정 체계에서 탄력성에 대한 더 높은 정도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가?
25	만일 그렇다면, 탄력성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26	당신의 경험에서 제한과 예외의 영역이 문제를 구성하는가?
27	제한과 예외가 국가적 단계에서 확정된 경우, 국경을 넘은 효과가 있다면, 보상이 예외의 부분일 때, 공평한 보상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28	(a) (기관 사용자) 당신은 저작물의 유지나 보관을 하기 위한 예외를 사용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권리자) 당신은 보존 예외의 도서관, 교육, 박물관에 의한 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29	만일 문제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가장 잘 해결될 것인가?
30	만일 당신의 관점이 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혜택을 받는 기관의 어떤 행위들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
31	만일 당신의 관점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항	질 의
32	만일 당신의 관점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33	(a) (기관 사용자) 연구나 개인적 조사의 목적으로 수집할 때, 국경을 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당신에게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자들과의 협상을 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사용자나 소비자) 당신이 기관에 있지 않을 때, 대학과 국가 도서관과 같은 기관의 수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들을 컨설팅할 때, 당신은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c) (권리자) 연구나 개인적 조사의 목적으로 기관들에게 원격 접근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관 사용자들과의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34	만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35	만일 당신의 관점이 법적 해결이 요구된다면,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혜택 받는 기관들의 어떠한 행위들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36	당신의 관점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37	(a) (도서관) 당신은 당신의 수집에서 보유한 책이나 다른 것들을 전자적으로 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을 협상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사용자나 소비자) 공공 도서관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책과 같은 것들을 전자적으로 대출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c) (권리자) 책과 같은 것들을 전자적으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들과의 협정을 협상한 적이 있는가?
38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가장 잘 해결되는가?
39	(기관 사용자)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집의 운영에서 당신이 보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떠한 문제와 부딪혔는가?
40	(기관 사용자, 권리자, 집합적 관리 조직) 2011 MoU의 결과들이 국경을 초월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EU 전역에 비상업적 작품들이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41	콘텐츠의 다른 유형을 위하여 이미 동의된 것을 넘은 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가?
42	(a) (사용자나 소비자, 기관 사용자) 당신은 교육을 위한 도해에 대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권리자) 교육을 위한 도해에 대한 저작물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부터 초래된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43	만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가장 잘 해결될 것인가?
44	교육 목적을 위한 도해 콘텐츠의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가 존재하는가? 그것들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45	만일 당신의 관점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혜택을 받는 기관의 어떤 행위들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
46	당신의 관점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47	(a) (사용자나 소비자, 기관 사용자) 연구 행위의 상황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권리자) 연구 행위의 상황에서 저작물이 사용된 방법으로부터 초래된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문항	질 의
48	만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가장 잘 해결될 것인가?
49	연구 목적을 위한 콘텐츠의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가 회원국들에 존재하는가? 그것들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50	(a) (장애인, 장애인 대표 단체) 당신은 회원국들의 장애인 예외 규정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EU에서 특정한 형태로 공표되는 작품을 배포하거나 전달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c) (권리자) 특정 형태로 공표된 저작물의 배포와 전달을 허락하는 제한이나 예외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51	만일 문제가 있다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가?
52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체계가 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53	(a) (사용자나 소비자, 기관 사용자) 당신이 텍스트나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시도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서비스 제공자) 당신은 텍스트나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c) (권리자) 당신은 보호되는 콘텐츠와 관련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의 사용으로부터 초래된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54	만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들은 가장 잘 해결되는가?
55	만일 당신의 관점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어떠한 행위들과 어떠한 조건하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56	당신의 관점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57	저작권과 관련되지 않지만, 텍스트나 데이터 마이닝 방법의 사용에 대한 장벽을 구성하는 다른 문제들이 존재하는가?
58	(a) (사용자나 소비자) 당신은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서비스 제공자) 당신은 당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기존에 저작물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c) (권리자) 당신은 인터넷 상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기존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초래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59	(a) (사용자나 소비자, 권리자) 당신은 당신이 기존 저작물에 바탕을 두고 만든 작품이 온라인 사용에 대하여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환경에서 소유의 시스템은 충분한가?
	(b) (서비스 제공자) 당신은 온라인 사용에 대한 작품들을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당신의 시스템을 통하여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공표하고 배포하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제공하는가?

문항	질 의
60	(a) (사용자나 소비자, 권리자) 당신은 기존 저작물에 바탕을 두고 당신이 만든 작품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구체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b) (서비스 제공자) 당신은 사용자들이 당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기존 저작물에 바탕을 둔 작품을 만들어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가?
61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가장 잘 해결되는가?
62	만일 당신의 관점이 입법적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어떠한 행위들과 어떠한 조건들 하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63	당신의 관점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64	당신의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 복제와 복사 기술 예외의 범위와 적용이 EU 차원에서 분명해질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65	권리자들에 의해 라이선스를 받고, 권리자들에 대한 손해가 최소한도인 서비스의 환경에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디지털 복제물들은 사적 복제 추가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가?
66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적용에 있어 추가 부담금에 대한 변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권리자의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67	추가 부담금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송장에 추가 부담금을 표시하는 것이 가치의 추가로 볼 것인가?
68	당신은 국경을 넘는 거래가 불합리한 부담금 지급, 동일한 부담금의 이중 지급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69	부담금이 포함된 상품의 몇 퍼센트가 사적 복제와 분명히 관련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자연인 이외에 사람들에게 판매되는가? 그러한 거래의 몇몇은 불합리한 지급을 초래하는가?
70	불합리한 지급의 발생은 어디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래의 몇 퍼센트인가? 몇몇 회원국들에서 존재하는 기존 보상 체계나 면제조치가 그러한 상황을 구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71	만일 당신이 부담금 체계의 현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을까?
72	(작가나 실연자) 당신의 작품과 공연의 실행에 대하여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체계가 가장 좋은가?
73	EU 차원에서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74	만일 당신이 현재 규정들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분명히 하는 단점을 다루기 위해 무엇을 제안하는가?
75	EU에서 민사적 집행 시스템이 상업적 목적을 가진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더 효율적이어야만 하는가?
76	특히, 현재의 법적 체계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데 있어, 중개인의 충분한 관여를 허락할 정도로 명확한가? 만일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들이 중개인들의 협조를 촉진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는가?
77	현재의 민사적 집행 체계는 저작권의 보유에 대한 권리와 개인 생활의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 사이의 권리 균형을 담보하는가?

문항	질의
78	EU는 EU 전역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와 예외에 대한 일관적인 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EU 저작권 표제의 확립과 집행에 대한 하나의 체계를 추구해야만 하는가?
79	이것은 EU에서 저작권의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가 되어야만 하는가? 회원국들 법제 사이의 현재 수준의 차이는 이것이 더 긴 프로젝트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80	저작권을 위한 EU법 체계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는가?

### 3. 각계의 반응

위와 같은 질의 내용을 포함한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전 세계 관련기관들은 저작권법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다. 먼저,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을 강제적으로 등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하였지만, 세계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글로벌 레퍼토리 데이터베이스 계획에는 찬성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는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에 대한 통일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된 유럽연합의 보충성 원칙과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sup>4)</sup>

유로피아나(Europeana)도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월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유로피아나는 80개의 논점 중 직접 관련된 32개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유럽 전역에 걸친 통일된 법이 필요함에는 동의하였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사후 70년을 5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고, 저작권 관련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특히, 유로피아나는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듯, 저작권 예외 조항을 두어 문화유산기관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미국 도서관저작권동맹(Library Copyright Alliance, LCA)은 위의 80개의 질의 중 도서관과 관계가 있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4) 손유진, 정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의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콘텐츠산업정보포털 2014. 3. 27. ([http://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822253.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0374&categorys=4&subcate=64&cateCode=0&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pageIndex=7](http://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822253.do?searchCnd=&searchWrd=&cateTp1=&cateTp2=&useAt=&menuNo=200374&categorys=4&subcate=64&cateCode=0&type=&inst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pageIndex=7) 2015. 5. 13. 최종방문).

였다. 주요 내용에는 디지털 전송, 저작물 보호기간, 제한과 예외 조항, 보존과 기록, 전자대출, 디지털화, 교육과 연구,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 있다.<sup>5)</sup>

특히, 미국 도서관저작권동맹은 공정이용으로서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러한 제한과 예외에 대한 조항을 고정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술의 발전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이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에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동참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들이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그 의견들은 각 단체나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III.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

#### 1.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 개요

2014년 11월 유럽의회는 2001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을 위하여 Julia Reda 의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 1월 Reda 의원은 EU 저작권의 현대화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2001년 정보사회 지침 등은 정보화 시대를 위한 규정으로서 만들어졌으나, 인터넷에 의해 활발해지고 있는 국경 간 문화적 교류의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일상의 온라인 활동에 불합리한 부담만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부합되는 저작권으로서 방향과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Reda 의원은 보고서와 함께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서 어떠한 이해관계자와 만났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게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일의 유럽 저작권이 필요하고, 유럽연합에 걸친 영역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쉽도록 혁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수행한 연구 등에 근거하여 단일의 유럽 규칙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저작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디지털 단일 시장의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5) 국립중앙도서관, “EU 저작권 제도 개혁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2014. 3. 24. (<http://wl.nl.go.kr/?p=20605> 2015. 5. 14. 최종방문).

6) Julia Reda, EU copyright evaluation report – explained (<https://juliareda.eu/copyright-evaluation-report-explained/> 2015. 5. 13. 최종 방문).

구체적인 저작권 개정의 내용으로서, Reda 의원은 먼저 국경 간 저작물 등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인 모호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Reda 의원은 본 보고서에서, 저작권 체계의 구성들을 갱신하기 위한 24가지 제안을 발표하였다.<sup>6)</sup>

여기에는 1.-2. 저작권 협의(consultation), 3. 저작자의 권리 강화, 4. 단일 유럽 저작권 타이틀, 5. 공공저작물의 소유, 6. 공유재산의 보호, 7. 저작권 기간의 조화, 8. 균형 이익, 9.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동등한 권리, 10. 국경 간 무역, 11. 예외의 의무화, 12. 변형창작의 환영, 13. 미래에도 보장되는 개방적 규범의 추가, 14. 시청각 인용의 허용, 15. 링크의 허용, 16. 저작권 프리 공중 공간, 17. 캐리커처와 패러디의 허용, 18.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의 허용, 19. 연구와 교육에 대한 권한 부여, 20. 전자 대출의 허용, 21. 합법적 사용에 대한 부담금의 제한, 22. 사적 복제 보상금의 투명성, 23.-24. 기술적 보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대한 예외로서 공공 영역에서 생산된 저작물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과 예외를 조화시키고, 저작권 보호 기간을 빠른 협약상의 저작자 사후 50년

으로 통일되어 축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의 제한 규정으로서 인터넷 하이퍼링크의 자유로운 사용, 연구나 교육 목적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 등을 허용하며, 이러한 제한과 예외의 행사가 기술적 조치에 의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시청각 인용과 같은 새로운 이용 사례를 위하여 새로운 예외가 만들어져야 하고, 전자대여나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등과 함께 예상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표현의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규범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7)</sup>

## 2. 보고서에 대한 반응

보고서의 발표 후, 유럽과 세계의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의 정보인권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는 위 보고서에서의 저작권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회가 위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전 유럽의회 의원인 Amelia는 위 보고서의 내용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작권 단체들은 위 보고서가 근본적으로 저작권 이념에 반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이익

7) 정보공유연대,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IPIleft (2015. 1. 30) (<http://ipleft.or.kr/?p=5748> 2015. 5. 13 최종 방문).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불균형적 보고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Reda 의원은 이러한 극과극인 반응에 대하여, 위 보고서는 전체 의회를 대표해서 현행 체제를 평가하는 것이고, 여러 단체의 이익에 대한 균형적 요소가 고려되고, 베른 협약 하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Reda 의원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대한 균형에 있어 이용자, 문화기관 그리고 창작자를 모두 고려하는 공동의 지향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IV. 시사점

오늘날,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반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들을 규율하고 조절해야 하는 저작권법들은 많은 경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이러한 저작권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개정은 대립되는 이익간의 충돌로 인하여 그에 대한 조정이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저작권 개정은 한 나라의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모든 이해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저작권 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첫째, 유럽연합의 저작권 개정에 대한 절차적인 면이다. 저작권 개정에 대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조화로운 저작권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여, 보다 조화로운 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저작권 개정에 대한 내용적인 면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 문제에 대한 조치의 강구 및 개방적 규범의 추구하고 같은 것은 우리 법제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저작권법도 유럽연합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좋은 점을 참조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현대의 타당한 저작권법이 확립되고, 그로 인해 저작권 산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 창 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IT법학 융합과정 조교수)

##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EU 저작권 제도 개혁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2014. 3. 24).
- 손유진, “정부,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의 개정에 대한 의견 표명”, 콘텐츠산업정보포털.
- 정보공유연대,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IPLet (2015. 1. 30).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지침 개정, 또 다시 연기될 전망”, 저작권 동향 [2014-03유럽].
- Julia Reda, Draf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1/29/EC.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the EU copyright rules.